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-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걱정할 것”을 “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걱정할 것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20억원”을 “다음 각 목의 금액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금융투자업자 : 20억원

나. 증권금융회사 : 법 제324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기자본
제2-11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증권금융회사 : 제8-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8이상일 것

제2-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2-21조 중 “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6항”을 “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-2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파생결합증권 중도환매시 적용하는 중도환매 가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및 그 산정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관련한 사항

제3-14조제4호사목 중 “잔존만기 1년 이내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.”를 “기업에 대한 신용공여”로 하고,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.

제3편제2장제6절의 제목 “최소영업자본액 산정”을 “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특례”로 한다.

제3-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-24조의4(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)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제3-6조제4호에 따른 레버리지비율을 산정하는 때에는 총자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

1. 영 제77조6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예탁받은 금전의 합계

2. 영 제77조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를 통해 예탁받은 금전의 합계

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잔존만기가 1개월 및 3개월 이내인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해 각각의 기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원화유동성자산 비율(이하 “원화유동성비율”이라 한다)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
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때 제3-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.

1.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 및 신탁계정대여금을 제외한
 - 대출채권
 - 가. “정상” 분류 자산의 100분의 0.85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
 - 나. “요주의” 분류 자산의 100분의 7
 - 다. “고정”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
 - 라. “회수의문” 분류 자산의 100분의 50
 - 마. “추정손실”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
2.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 및 신탁계정대여금
 - 가. “정상” 분류 자산
 - 1) 신용평가등급 BBB- 또는 A3-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의 경우(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 : 해당 자산의 100분의 0.85 이상
 - 2) 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산의 경우 : 해당 자산의 100분의 3 이상
 - 3) 그 밖의 자산의 경우 : 해당 자산의 100분의 2 이상
 - 나. “요주의” 분류 자산
 - 1)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: 해당 자산의 100분의 7이상
 - 2) 관련 자산이 아파트 이외인 경우 : 해당 자산의 100분의 10이상
 - 다. “고정”분류 자산의 100분의 30 이상

라. “회수의문”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

마. “추정손실”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이상

제3-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-45조의3(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위험 관리)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용위험 유발거래(신용공여, 채무보증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전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·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용위험 유발거래 후 신용위험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,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.

제3-6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하고,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예탁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예탁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

제4-20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에게 영 제52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(해당 투자자에 대해 법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은 제외한다)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가 기록된 전자기록물을 해당 투자자의

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행위

가. 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투자성향을 파악한 결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부적합·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투자자

나. 70세 이상인 투자자

제4-93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3. 제4-20조제1항제15호 각 목에 따른 투자자와 신탁재산을 영 제5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(해당 투자자에 대해 법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은 제외한다)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가 기록된 전자기록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행위

제4-102조의2 중 “자기자본”을 “자기자본(제3-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조달한 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로 하고, “자본금의 증감분”을 “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”으로 한다. 제4-102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-102조의5(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) ① 영 제77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외 본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”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말한다.

② 영 제77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

말한다.

1.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
2.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인 경우 매매금액 및 매매수량에 제한이 없는 것

③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 금융 관련 자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및 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
2.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
3.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에 대한 출자지분
 - 가. 영 제6조제4항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
 - 나.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
 - 다.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(제4-6조제4항제2호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)
 - 라. 영 제6조에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구
 - 마.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투자기구
5.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주권
6.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부적격 등급, 투자적격 등급 중 최하위 등

급 또는 차하위등급을 받은 회사채

7. 그 밖에 기업 자금 조달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

④ 영 제77조의6제2항제2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”이란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면서 예탁받은 예탁금과 이를 운용함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.

⑤ 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1.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예탁을 개시한 지 6개월 이내: 기업금융관련 자산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
2.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예탁을 개시한 지 6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: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
3.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예탁을 개시한 지 12개월 후부터 18개월 이내: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일 것
4. 예탁자의 예탁금 인출로 인해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: 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의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제3항 각 호 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을 것

⑥ 영 제77조의6제2항제5호 본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

다.

1. 부동산

2.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

3.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

4. 영 제2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함으로써 취득한 자산

5. 영 제24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

⑦ 영 제77조의6제3항제1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”이란 종합투자계좌로 수탁한 자금을 「신탁법」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을 통해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. 이 경우 구체적인 분별 관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
⑧ 영 제77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.

1. 종합투자계좌 예탁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거래일 것

2. 영 제77조의6제3항제5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할 것

3. 거래 전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고,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·유지할 것

4. 그 밖에 종합투자계좌 예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
⑨ 영 제77조의6제3항제3호에 따라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영 제77조의6제3항제3호에

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

1. 종합투자계좌로 예탁을 개시한 지 6개월 이내: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
 2. 종합투자계좌로 예탁을 개시 한 지 6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 :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일 것
 3. 종합투자계좌로 예탁을 개시 한 지 12개월 후부터 18개월 이내: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60이상일 것
 4. 종합투자계좌로 예탁을 개시 한 지 18개월 이후부터 예탁자의 예탁금 인출로 인해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영 제77조의6제3항제3호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: 영 제77조의6제3항제3호의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제3항 각 호 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을 것
- ⑩ 영 제77조의6제3항제4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
- ⑪ 영 제77조의6제3항제5호 본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”이란 영 제260조제1항(제1호는 제외한다)에서 정한 방법을 말한다.
- ⑫ 영 제77조의6제3항제5호 본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”이란 영 제260조제2항(제5호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영 제260조제2항을 준용할 때 “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”는 “준법감시인”으로 “집합투자재산”은

“종합투자계좌재산”으로 본다.

⑬ 영 제77조의6제3항제5호 단서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예탁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로서 반환을 요청하는 예탁자에게 원금과 사전에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계약한 경우를 말한다.

⑭ 영 제77조의6제3항제6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”란 같은 기업집단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)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.

⑮ 영 제77조의6제3항제9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1. 종합투자계좌 수탁액의 100분의 5에 달할 때까지 종합투자계좌 운용보수의 100분의 25이상을 적립하고, 종합투자계좌의 운용실적이 투자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는 것에 미달할 경우 동 적립금을 우선하여 충당할 것
2. 그 밖에 예탁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

제8-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-11조의2(준용규정) 외환건전성과 관련하여 제3-45조, 제3-46조부터 제3-54조까지 및 제3-68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”는 “외국환업무취급증권금융회사(「외국환거래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)”로 보며,

제3-51조의2에서 “신탁계정 등 위탁계정”은 증권금융회사가 법 제74조에 따라 예수한 투자자예탁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.

제8-12조제2항 중 “세부기준”을 “세부기준 및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37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정하는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”으로 한다.

제8-9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-91조(거래소 지분 한도 초과 소유 특례) 영 제366조제1항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”란 거래소 주주인 회사가 거래소 주주인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합병할 목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. 별표 10의 공통부분란 중 자본적정성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1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공통 부분	자본 적정성 ¹⁾	·순자본비율Ⅱ ·조정레버리지비율 ·차입부채비율	·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·적정한 자본유지 가능 성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1)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계량항목을 평가할 경우에는 종합투자계좌 예탁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3-45조의3: 시행일로부터 1개월
2. 제4-20조제1항제15호 및 제4-93조제34호: 시행일로부터 3개월
3. 별표10: 1년

제2조(기업신용공여 영업용순자본 차감 제외의 적용례) 제3-14조제4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수행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충당금 적립의 적용례) 제3-24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편입된 자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의 경과 조치) 제3-2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-11조(외국환업무 등록요건)</p> <p>①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 13조제2항제1호에서 “<u>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</u>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최근 결산기(반기결산을 포함한다)말의 자기자본(개별채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)이 <u>20억원 이상일 것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부합할 것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2-11조(외국환업무 등록요건)</p> <p>① ----- ----- <u>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</u>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목의 금액</u>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금융투자업자 : 20억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<u>증권금융회사 : 법 제324조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기자본</u></p> <p>2. 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<u>증권금융회사 : 제8-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8이상일 것</u></p>

② (생략)

③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 16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·폐지하거나 주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
제2-21조(내부통제기준 적용범위)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·운영함에 있어 이 장에 따라야 한다.

제2-24조(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)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파생상품(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.

<삭제>

제2-21조(내부통제기준 적용범위)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4항-----

-----.

제2-24조(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) ① -----

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② (생략)

제3-14조(차감항목) 제3-11조제1항에 따른 차감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대출채권(콜론, 환매조건부매수, 대출금, 매입대출채권, 사모사채, 제4-21조제1호다목에 따른 신용공여 및 이에 준하는 거래를 말한다) 중 담보가액(담보물의 종류, 담보가액 등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금융감

-----.

1. ~ 4. (생략)

5.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과생결합증권 중도 환매시 적용하는 중도환매 가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및 그 산정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관련한 사항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-14조(차감항목)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독원장이 정한다)을 초과하는 금액. 다만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
가. ~ 바. (생략)

사.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수행한 잔존만기 1년 이내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. 다만, 만기 자동연장조건 또는 만기시 재취득조건 등의 특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잔존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.

아.·자. (생략)

4의2. (생략)

5. ~ 17. (생략)

제6절 최소영업자본액 산정

<신설>

-----.

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
사. -----

-----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

아.·자. (현행과 같음)

4의2. (현행과 같음)

5. ~ 17. (현행과 같음)

제6절 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특례

제3-24조의4(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)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제3-6조 제4호에 따른 레버리지비율을 산정하는 때에는 총자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

1. 영 제77조6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예탁 받은 금전의 합계

2. 영 제77조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를 통해 예탁 받은 금전의 합계

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잔존 만기가 1개월 및 3개월 이내인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해 각각의 기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원화유동성자산 비율(이하 “원화유동성비율”이라 한다)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
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때 제3-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.

1.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 및 신탁계정대여금을 제외한 대출채권

가. “정상” 분류 자산의 100분의 0.85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

나. “요주의” 분류 자산의 100
분의 7

다. “고정” 분류 자산의 100분
의 20

라. “회수의문” 분류 자산의 1
00분의 50

마. “추정손실” 분류 자산의 1
00분의 100

2.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
출채권 및 신탁계정대여금

가. “정상” 분류 자산

1) 신용평가등급 BBB- 또
는 A3- 이상 기업이 지
급보증한 자산의 경우
(나목에 해당하는 경우
를 제외한다) : 해당 자
산의 100분의 0.85 이상

2) 최초 취급 후 1년 이상
경과한 자산의 경우 : 해
당 자산의 100분의 3 이
상

3) 그 밖의 자산의 경우 :
해당 자산의 100분의 2
이상

나. “요주의” 분류 자산

1)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

<신 설>

경우 : 해당 자산의 100분의 7이상

2) 관련 자산이 아파트 이외인 경우 : 해당 자산의 100분의 10이상

다. “고정”분류 자산의 100분의 30 이상

라. “회수의문”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

마. “추정손실”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이상

제3-45조의3(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위험 관리)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용위험 유발거래(신용공여, 채무보증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전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·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용위험 유발거래 후 신용위험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,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3-66조(영업보고서등의 제출)

① 영 제36조제3항제11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~ 7. (생략)

<신설>

8. (생략)

제4-20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

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 ~ 14. (생략)

<신설>

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.

제3-66조(영업보고서등의 제출)

① -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 제 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예탁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예탁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

9. (현행 제8호와 같음)

제4-20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

① -----

-----.

1. ~ 14. (생략)

1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에게 영

제5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(해당 투자자에 대해 법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은 제외한다)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가 기록된 전자기록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행위

가. 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투자성향을 파악한 결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부적합·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투자자

나. 70세 이상인 투자자

제4-93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 ~ 33. (생략)

<신설>

제4-93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-----

1. ~ 33. (현행과 같음)

33. 제4-20조제1항제15호 각 목에 따른 투자자와 신탁재산을 영 제5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융투자상

품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(해당 투자자에 대해 법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은 제외한다)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가 기록된 전자기록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행위

제4-102조의2(자기자본의 범위) 법 제77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에 지정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.

제4-102조의5(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) 영 제77조의6제1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”이란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.

제4-102조의2(자기자본의 범위) ----- 자기자본 (제3-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조달한 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--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-----.

제4-102조의5(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) ① 영 제77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외 본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”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말한다. ② 영 제77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

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

1.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

2.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인 경우 매매금액 및 매매수량에 제한이 없는 것

③ 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 전단 및 동조 제3항제3호 전단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및 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

2.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

3.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에 대한 출자지분

가. 영 제6조제4항14호에 따
른 기업인수목적회사

나.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
기구

다.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
기구(제4-6조제4항제2호
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한
한다)

라. 영 제6조에1항 각 호에 따
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
자기구

마.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
정하는 투자기구

5.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
법인의 주권

6.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부
적격 등급, 투자적격 등급 중
최하위 등급 또는 차하위등급
을 받은 회사채

7. 그 밖에 기업 자금 조달과의
관련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
원장이 정하는 자산

④ 영 제77조의6제2항제2호에서
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
방법”이란 단기금융업무를 영위
하면서 예탁받은 예탁금과 이를
운용함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

에 대하여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.

⑤ 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

1.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예탁을 개시한 지 6개월 이내: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

2.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예탁을 개시한 지 6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: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

3.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예탁을 개시한 지 12개월 후부터 18개월 이내: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일 것

4. 예탁자의 예탁금 인출로 인해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: 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의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제3항 각 호

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을 것
⑥ 영 제77조의6제2항제5호 본
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
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”이
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부동산

2.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
생상품

3.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
대한 대출채권

4. 영 제240조제4항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
투자함으로써 취득한 자산

5. 영 제240조제5항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

⑦ 영 제77조의6제3항제1호에서
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
방법”이란 종합투자계좌로 수탁
한 자금을 「신탁법」 제3조제1
항제3호에 따른 신탁을 통해 고
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
법을 말한다. 이 경우 구체적인
분별 관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
이 정한다.

⑧ 영 제77조의6제3항제2호에
따른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기

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
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
을 말한다.

1. 종합투자계좌 예탁자의 이
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거래
일 것

2. 영 제77조의6제3항제5호에
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
할 것

3. 거래 전 준법감시인의 확인
을 받고, 관련 자료를 5년간
보관·유지할 것

4. 그 밖에 종합투자계좌 예탁
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
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
충족할 것

⑨ 영 제77조의6제3항제3호에
따라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
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
기준을 충족하면 영 제77조의6
제3항제3호에서 정한 비율을 충
족한 것으로 본다

1. 종합투자계좌로 예탁을 개시
한 지 6개월 이내: 기업금융관
련자산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
니함

2. 종합투자계좌로 예탁을 개시

한 지 6개월 후부터 12개월 이
내 :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
이 100분의 40이상일 것

3. 종합투자계좌로 예탁을 개시
한 지 12개월 후부터 18개월
이내: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
율이 100분의 60이상일 것

4. 예탁자의 예탁금 인출로 인해
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
영 제77조의6제3항제3호의 비
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: 영
제77조의6제3항제3호의 비율
을 충족할 때까지 제3항 각 호
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을 것

⑩ 영 제제77조의6제3항제4호다
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
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법 제
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
록한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
합투자증권을 말한다.

⑪ 영 제77조의6제3항제5호 본
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
고시하는 방법”이란 영 제260조
제1항(제1호는 제외한다)에서
정한 방법을 말한다.

⑫ 영 제77조의6제3항제5호 본
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

고시하는 공정가액”이란 영 제 260조제2항(제5호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영 제260조제2항을 준용할 때 “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”는 “준법감시인”으로 “집합투자재산”은 “종합투자계좌재산”으로 본다.

⑬ 영 제77조의6제3항제5호 단서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예탁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로서 반환을 요청하는 예탁자에게 원금과 사전에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계약한 경우를 말한다.

⑭ 영 제77조의6제3항제6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”란 같은 기업집단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)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.

⑮ 영 제77조의6제3항제9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<신 설>

제8-12조(회계처리원칙) ① (생략)

1. 종합투자계좌 수탁액의 100분의 5에 달할 때까지 종합투자계좌 운용보수의 100분의 25이상을 적립하고, 종합투자계좌의 운용실적이 투자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는 것에 미달할 경우 동 적립금을 우선하여 충당할 것
2. 그 밖에 예탁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

제8-11조의2(준용규정) 외환건전성과 관련하여 제3-45조, 제3-46조부터 제3-54조까지 및 제3-68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”는 “외국환업무취급증권금융회사(「외국환거래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)”로 보며, 제3-51조의2에서 “신탁계정 등 위탁계정”은 증권금융회사가 법 제74조에 따라 예수한 투자자예탁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.

제8-12조(회계처리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
<신 설>

② -----

-- 세부기준 및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37조제2항제2호 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정하는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-----
-----.

제8-91조(거래소 지분 한도 초과 소유 특례) 영 제366조제1항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”란 거래소 주주인 회사가 거래소 주주인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합병할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